

#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5월 2일

나. 제출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3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5월 10일

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강신석

#### 나. 제안이유

○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휴가 부여기준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사량 시스템에 사용될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○ 보육휴가 부여기준 개정(안 제11조제6항)

• 자녀 기준 : 2세 미만 → 영유아

• 매년 권장연가일수 소진 시 보육휴가 사용 가능

○ 공무원증 신설(안 제12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휴가 부여기준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사량 시스템에 사용될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보육휴가 부여기준의 확대로 일과 가정 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